

의안번호	2201370
의 회 인	박지혜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1.
추계번호	24A1478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·도시가스요금·수도요금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제6호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·도시가스요금·수도요금을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(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)
 -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는 “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(한시)” 사업(2,520억원)이 계획되어 있어 개정안이 단순히 법적 근거를 두는 취지라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, 동 사업은 한시 사업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- 다만, 개정안은 지원의 대상·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·도시가스요금·수도요금 현황

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「소상공인실태조사」가 있는데, 동 자료는 영업비용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영업비용의 일부인 전기·도시가스요금·수도요금 현황은 없음

- '매출원가', '급여총액', '임차료'를 제외한 기타 영업비용은 2022년 기준으로 166.1조원 수준임(조사대상 소상공인 사업체 412.4만개 기준)

[표 3] 소상공인실태조사(2022): 영업비용 현황

(단위: 만개, 조원)

	사업체 수	영업비용				
		합계	매출원가	급여총액	임차료	기타
전산업	412.4	835.7	519.4	107.3	42.8	166.1
제조업	48.8	190.3	113.7	30.5	5.4	40.6
건설업	46.0	119.1	51.6	23.0	5.4	39.0
도매 및 소매업	135.1	365.2	286.9	24.6	12.4	41.4
숙박 및 음식점업	72.8	82.0	47.4	11.4	10.1	13.1
정보통신업	7.7	11.6	2.8	2.9	0.3	5.7
부동산업	17.3	12.0	1.8	2.5	1.2	6.5
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	10.7	14.8	3.5	3.6	0.8	6.9
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10.8	13.6	3.5	3.6	0.8	5.7
교육 서비스업	18.5	8.3	1.2	2.4	2.0	2.7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10.2	6.2	1.3	1.0	2.0	1.9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34.6	12.8	5.7	1.8	2.5	2.8

주: 영업비용 중 “기타”는 영업비용에서 '매출원가', '급여총액', '임차료'를 제외한 세금공과, 감가상각비, 운반비, 통신비, 소모품비, 잡비 등 모든 영업비용을 말함

자료: 통계청·중소벤처기업부, 「소상공인실태조사」(2022년 기준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